

1994년3월4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11차 본회의)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안(대안)
2.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3.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4.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
5. 농어촌특별세법안
6.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7. 수의사법 중 개정법률안
8.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9.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10. 사망사업법 개정법률안
11. 수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
12. 한국한의학연구소법안
1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14. 1993년도 농림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
15.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제1차 총회 참석보고

부의된 안건

4.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
5. 농어촌특별세법안(정부 제출)	2
6.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
7. 수의사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8.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9.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10. 사망사업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11. 수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12. 한국한의학연구소법안(정부 제출)	6
1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안(대안)(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장 제출)	7
2.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장 제출)	8
3.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장 제출)	9
14. 1993년도 농림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농림수산위원장 제출)	11
15.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제1차 총회 참석보고	11
o 의사진행의 건	12

(22시35분 개의)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만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본회

먼저 의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유수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만섭**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는 이른바 정치개혁입법입니다.

그러나 이들 세 가지 법률은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부터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시37분)

○**의장 이만섭** 의사일정 제4항 여권법 중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외무통일위원회 강신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조 의원** 외무통일위원회 강신조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9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5일 자로 외무통일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서 불필요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여권법상의 여러 제도를 폐지하고 해외여행 자유화시책을 악용하여 국내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82년에 개정된 현행법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귀국서약제도 및 여권반납명령제도와 동 제도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 등 불필요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둘째, 해외도피로 인한 기소중지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기소되어 있는 자와 마찬가지로 여권의 발급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여권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 종료된 자 및 여행국의 법령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한 여권발급 등의 제한 기간을 현행 1년 이상 5년 이하에서 1년 이상 3년 이하로 단축하며,

넷째, 여권이 부정하게 발급된 것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에 여권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여권법위반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고 여권을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

하거나 제공받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11월 24일 제165회 국회 제7차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이 법률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4년 3월 2일 제166회 국회 제3차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동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의 해외여행을 제약하는 여권효력상실제도를 삭제하고 현행 여권반납명령제도를 존치토록 하며 여권발급 등의 제한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기타 약간의 자구를 조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외무통일위원회가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외무통일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장 이만섭** 그러면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은 외무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농어촌특별세법안(정부 제출)

6.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시42분)

○**의장 이만섭** 의사일정 제5항 농어촌특별세법안, 의사일정 제6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위원회 정필근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근 의원 재무위원회 정필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로부터 제출된 농어촌특별세법안 및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법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는 '94년 3월 2일 제4차 회의에서 모두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농어촌특별세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득세 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자, 과세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고가소비자에 대한 특별소비세·증권거래세·취득세·종합토지세 및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대해 1994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되 1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소득에 대한 부과는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년간만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당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추가적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 과표 1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 2%를 과세토록 하고 있는 것을 5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 과세토록 하고,

둘째, 이에 따른 세입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주권양도가격의 0.1% 과세를 0.15%로 인상하였으며,

셋째, 일부 표현이 부적절한 부분에 대한 자구정리를 하고,

넷째,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단위농·수·축협의 저축감면세액에 대한 과세 중 2ha 이하 농지 또는 20t 이하 선박소유의 농어민 및 월정급여 6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급받는 예탁금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 제정 시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장기저축을 유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저축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저축 기간이 장기인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 72만 원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저축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며,

둘째,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에도 경마제도 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복권당첨소득과 마찬가지로 25%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당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난해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율이 축소됨에 따라 공공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9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종전 제57조의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둘째, 일부 그 표현이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특별세법안 및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농어촌특별세법안 심사보고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만섭 그러면 먼저 농어촌특별세법안은 재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은 재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의사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시48분)

○의장 이만섭 의사일정 제7항 수의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이길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재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이길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의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9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법의 제안이유는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수의사의 면허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의사 자격의 결격사유 중 농자, 아자·맹자 및 불구자 등을 삭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제약을 없애자는 것이고,

둘째, 현재 농림수산부장관 소속의 수의사자격시험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의사국가시험을 농림수산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하되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의사국가시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자는 데 있습니다.

셋째, 현재는 대학에서 부전공으로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도 수의사 자격시험을 응시토록 되어 있으나 진료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앞으로는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는 자로 한정하여 시험응시 자격요건을 강화하자는 데 있습니다.

넷째, 수의사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는 재시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다시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면허가 취소된 수의사에 대한 면허부여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하여 수정한 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의학과 전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에 한하여 수의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현재 수의사 자격획득을 목적으로 수의학을 부전공으로 하고 있는 현재 학생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둘째, 수의사는 수의사회의 정관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로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다른 입법례와 같게 하기 위하여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약간의 자구를 정리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심사를 거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참 조)

수의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림수산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장 이만섭 수의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사방사업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시52분)

○의장 이만섭 의사일정 제8항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사방사업법 개정법률안, 이상 세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정창현 의원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현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정창현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사방사업법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한 것을 토대로 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의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로 같음하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의 경우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불 및 산림 병충해 등의 예방과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유림에 보다 많은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필요하므로 시·도지사 또는 영림서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산림의 소유자에게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하도록 권장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동 법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축조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정부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방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의 경우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방사업법 제8조 “산림토목기술자”는 산림법의 통과를 전제로 하여 개정하려는 것인데 산림법이 사정상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부득이 “산림토목기술자”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임도기술자”라고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심사를 거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방사업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림수산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만섭 그러면 먼저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는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의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방사업법 개정법률안 이것은 농림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수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시57분)

○의장 이만섭 의사일정 제11항 수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허재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홍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허재홍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3년 9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수산물의 제조·가공에 관한 보고의무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산물 제조·가공업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문에 관한 사항을 법령정비 차원에서 법률로 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행정절차 간소화를 수산

물의 제조·가공을 하는 자에게 그 제조·가공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수산물검사소장이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자 등에게 이 법에 위반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그 제조·가공 등을 중지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할 경우에 미리 당해 처분의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청문제도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본법에 규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하여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수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림수산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장 이만섭 그러면 수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한국한의학연구소법안(정부 제출)

(23시)

○의장 이만섭 의사일정 제12항 한국한의학연구소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강우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혁 의원 보건사회위원회 강우혁 의원입니다.

한국한의학연구소법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4년 2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2월 14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제정법률안으로서 우리 민족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의학에 관한 종합

적인 연구·분석업무를 담당할 한국한의학연구소를 설립·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한의학의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해서 한의학의 기본이론과 임상·실험연구, 한약제제의 개발에 대한 연구 등 한방의학의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둘째, 연구소에는 이사장과 소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고 소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셋째, 연구소는 정부 등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에 의하여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는 이 법안을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제3차 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해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한의학연구소의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임원의 구성이 중요해서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수정해 가지고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구소 소장은 한의학전문인으로 하되 임원은 한의사, 의사, 약사 등 보건관계 전문인을 포함시키고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할 것을 의결해서 정부 측에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한국한의학연구소법안 심사보고서
(보건사회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장 이만섭 그러면 한국한의학연구소법안은 보사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시03분)

○의장 이만섭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양문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희 의원 보건사회위원회 양문희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4년 2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인 2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총회의 의결사항 중 본부 임원의 선출 등에 대하여 의결정족수 완화를 통하여 총회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하여,

첫째, 총회의 의결사항 중 사무총장을 제외한 본부 임원의 선출·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던 것을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둘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국민 이익을 보호하고 전과자의 양산을 방지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4년 2월 28일 제2차 위원회에서 본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중한 심사 끝에 본 법률안을 정부원안 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1994년 3월 2일 제3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본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보건사회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섭 그러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안(대안)(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장 제출)

(23시07분)

○의장 이만섭 아까 잠깐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이 지금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유인물이 여러 의원들 앞에 배포가 된 줄 압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안(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황윤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기 의원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민주당 소속 황윤기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우리의 선거사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오던 선거의 과열과 타락, 불법으로 얼룩진 선거풍토를 일신하여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실현함으로써 공명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편, 현행의 선거제도는 각종 선거를 개별법에서 따로 규율하고 있는 관계로 제도가 복잡하고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하나의 통합선거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1월 15일 민주당에서 제안한 공직자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안과 동년 11월 25일 민주당에서 제안한 공직선거법안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심사를 한 결과 두 법안을 폐기하고 하나의 통합된 선거법안으로 성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금까지 별개의 선거법 체계로 되어 있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여 모든 선거에 통일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둘째,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5년 내지 10년간 선거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셋째, 선거기간을 대통령선거의 경우 23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경우 17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14일로 단축함으로써 선거경비를 절약토록 하고,

넷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법정화 하여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 국회의원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자치구·시·군의회의원과 장의 선거에서도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선거운동 규제방법을 포괄적 제한·금지방식에서 개별적 제한·금지방식으로 전환하여 금지·제한되지 아니한 선거운동은 모두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였으며,

일곱째, 선거운동은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되, 소수의 유급선거사무원 이외에는 실비보상을 금지하고

여덟째, 선전 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경력방송, 합동연설회개최비용 등 주요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투·개표참관인 수당 등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확대하여 선거운동의 공영제를 강화하였으며,

아홉째, 기부행위 제한 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하여 선거기간 중에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제한하였으며 기부행위 제한대상도 확대하고,

열째, 평균선거비용 제한액을 대통령선거 193억 원, 시·도지사선거 7억 2,000만 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5700만 원, 구·시·군의 장 선거 5600만 원, 시·도의회의원선거 1800만 원, 구·시·군의회의원선거 1100만 원 등으로 하여 선거비용 산출기준을 법정화하는 한편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금융기관계좌를 통하여 하도록 하였으며,

열한째,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1시간 연장을 하고,

열두째, 전국구국회의원선거의 의석 배분은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전국구국회의원이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퇴직되도록 하였으며,

열셋째, 동시선거실시에 대비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고,

열넷째, 당선무효 사유를 확대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및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도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였으며,

열다섯째, 일정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소·고발을 한 후보자 또는 정당의 중앙당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끝으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4개의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1995년 6월 27일 동시에 실시하되 그 임기는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안(대안)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장)

(부록에 실음)

.....

○의장 이만섭 그러면 먼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안(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장 제출)

(23시15분)

○의장 이만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강신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욱 의원 강신욱 의원입니다.

정치자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정치자금의 양성화함으로써 정치자금 조달에 따른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공개적으로 조달된 깨끗한 자금으로 정당운영과 정치활동비용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이 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는 작년 11월 15일 민주자유당에서 제안한 이 법 개정안과 동년 9월 16일 민주당에서 제안한 이 법 개정안이 기본취지는 모두 같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두 법안을 폐기하고 합의된 사항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금까지는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한하여 지구당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국회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정당의 지구당에 후원회의 구성을 허용하고 후원회의 회원 수를 중앙당 후원회는 1000명에서 2000명으로, 시·도지부후원회는 300명에서 500명으로, 지구당과 국회의원후원회는 200명에서 300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며 후원회 회원의 회비납부를 의무화함으로써 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후원회의 모금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집회에 의한 모금과 광고에 의한 모금을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던 것을 그 회수를 확대하여 평년에는 각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3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기간 중에는 1회에 한하도록 하는 한편 공직선거일 전 3월부터 선거일까지는 금품모집을 위한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기부제한기간 중에는 금품모집을 위한 집회에서 연예활동과 금품제공을 금지함으로써 불법타락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정치자금을 납입, 기부받은 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토록 하고 국회의원후원회와 지구당후원회의 경우에는 정액으로 표시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후원회의 모금활동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넷째, 국고보조금의 용도에 조직활동비, 선전비

와 기타 정당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하고 보조금 금액을 현행 선거권자 1인당 6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선거마다 800원씩을, 지방선거를 동시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선거마다 600원씩을 추가하여 계상함으로써 정당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시에는 보조금의 지출과 경리 상황 등을 조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보고의 요건을 엄격히 하며 회계보고의 내용열람과 이의신청 등의 제도를 둠으로써 국고보조금을 정당한 방법과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치자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장)

(부록에 실음)

.....

○의장 이만섭 그러면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의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장 제출)

(23시20분)

○의장 이만섭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강수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림 의원 강수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대 국회 이래 우리 민주당이 추진해 온 개혁법안에 대해서 정부 및 여러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1993년 2월 19일 박상천 의원의 94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과

1992년 6월 5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당 특별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동시에 지방의회의 국정감사 허용,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제도의 신설, 시·군을 통합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고 기타 지방자치제도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성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이나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또는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참여제도를 보장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서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의회가 그 감사를 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성을 제고시켰습니다.

다섯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지방의회 회기를 현행보다 5일을 연장하고 연간 총회의 일수도 20일을 연장하였습니다.

일곱째,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읍·면·동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위임사무 및 시·도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을 때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리적인 이견조정을 가능토록 했습니다.

아홉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실시시기는 1995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토록 했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를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했습니다.

유인물에 조금 착오가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서 정정해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자치단체장의 임명에 있어서 특별시와 직할시의 부시장과 도의 부지사는 정무직 또는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1인은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자격 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과 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그 임명절차를 종료토록 했습니다.

시·군·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당해 시장·군수·부청장이 임명하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임기만료시까지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그 임명절차를 종료토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참 조)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장)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섭 그러면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한 세 건의 정치관계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미 법사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강수립 의원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착오를 정정해 주셨는데 앞으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착오를 위해서, 착오의 정정을 위해서 자구 정리 등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완 정리 문제를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4. 1993년도 농림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
(농림수산위원장 제출)

(23시29분)

○의장 이만섭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1993년도 농림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165회 정기국회에서 운영위원회 등 15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마는 농림수산위원회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늦게 제출함에 따라서 오늘 부득이 상정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993년도 농림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참 조)

1993년도 농림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
(농림수산위원회)

15.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제1차 총회 참석보고
(23시30분)

○의장 이만섭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제1차 총회 참석보고를 상정을 합니다.

이윤수 의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의원 민주당 소속 성남시 수정구 출신 이윤수 의원입니다.

서면으로 대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초선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설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한 번이라도 더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빨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제1차 총회 참석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제1차 총회가 지난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총회에는 전 세계 스카우트의원연맹 회원국 55개국에서 70명의 정대표와 76명의 옵서버 등 총 1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스카우트의원연맹 헌장에 따라서 3년마다 개최되는 이번 제1차 총회에는 이성호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을 단장으로 김종완 의원, 강창희 의원, 정창현 의원과 본 의원 그리고 권용태 전문위원으로 대표단이 구성되었으며 김종호 의원은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총재 자격으로, 보이스카우트 승병구 사무총장은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사무총장 자격으로 각각 참석을 했습니다.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은 각국의 스카우트 출신 현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의원연맹이 국제적으로 연합한 조직체로써 다양한 정당의 의원들이 비정치적인 이념으로 청소년정책 협의와 법안의 제정과 스카우트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국별 조직현황을 보고드리면 국가별로 60여 개국이 이미 조직되어 있고 30여 개국이 창설을 서두르고 있는 등 회원국 수는 계속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먼저 총회의 주요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1991년 8월 개최된 창설총회에서 초대 총재로 선출된 김종호 의원이 제2대 총재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재선되었고 부총재로는 칠레의 발데스 상원의장과 영국의 빌 위커 의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둘째, 이틀에 걸쳐 진행된 네 차례의 본회의에서는 스카우트와 청소년 관련 정책 법률제정으로 세계적인 환경문제, 문맹 퇴치, 마약, 흡연, 에이즈 예방, 장애인 문제, 불우한 나라 돕기, 세계평화 등 광범위한 문제에 대하여 각국별로 사례를 발표했고 이에 대한 의원연맹의 역할과 지원책이 중점적으로 토의됐습니다.

이 회의에서 스카우트의 기본이념과 정신 중에서도 타인에 대한 봉사 정신, 자기존중과 이에 따른 행동, 정신적인 가치 그리고 환경과 자연보호 정신들은 청소년정책에 반영되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부분 참석 대표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세계 각국의 의원연맹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토론에 한국 대표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특히 91년도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17회 세계잼버리의 지원활동의 사례 등도 발표가 됐습니다.

셋째로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서 청소년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하였고 1997년 제2차 총회까지 현장을 개정하여 구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모든 회의 진행을 한국어로 진행하여 이를 영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로 동시통역 함으로써 국제회의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어가 공식 언어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편 1995년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4차 이사회를 서울에서 개최기로 결정하였으며 1997년에 개최되는 제2차 총회는 필리핀 마닐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참석자 전원이 칠레의 아조카르 알윈 대통령을 예방해서 이 총회 개최의 지원에 감사를 표시하고 리셉션을 가졌으며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명예총재인 스웨덴 구스타프 국왕이 폐회식에 참석해서 스카우트의 중요성과 이 연맹의 발전에 관해 연설을 했고 김종호 총재는 그 자리에서 스카우트 의원 외교의 공로로 국왕으로부터 기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칭찬해 주시면 천천히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동 총회는 한국이 주관한 제1차 총

회로서 청소년을 위한 의원 외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각국이 처해 있는 사회환경에서 스카우팅이 청소년 인격형성에 얼마나 중요한가와 이를 위한 정책입안과 지원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고 모든 정치적인 입장을 초월해서 스카우트의 정신이라는 공통적인 인식하에 스카우트 출신 의원으로서의 형제애로 결속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을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제1차 총회 참석보고
(부록에 실음)

○ 의사진행의 건

(23시35분)

○의장 이만섭 이윤수 의원이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별로 짧지 않은 것 같군요. 그런데 우리 국회의 제일 선배이신 홍영기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리는데 정말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의원 민주당의 홍영기올시다.

야심한 시각에 제가 올라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간단히 10분 내로 더 가능하다면 5분 내로 몇 말씀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민주당은 UR 협상이 작년 12월 15일 가조인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BOP 품목과 웨이버 품목 그리고 남북 간 거래 공산품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의 인하문제 이런 등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부당하거나 심히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정부에 수차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UR 협상은 다자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재협상은 불가능하다 또 개방의 폭을 넓히는 재협상이 가능하지만 개방의 폭을 좁

히는 재협상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여당 의원께서도 작금 양일의 보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은 작년 12월 15일 최종협정에서 목재류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지 않겠다 무세화하겠다고 약정을 해 놓고도 현행 관세율인 8%의 절반인 4%의 관세를 고집을 하는 그러한 수정된 내용의 CS를 제출을 했고, 미국은 이에 대해서 반도체 비철금속 또 목재류 증류주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15일 가조인한 최종협정에서는 무관세로 하겠다 관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정을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정을 일방적으로 폐기를 해서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상당 액수의 관세를 물리는 방향으로 내용을 수정한 CS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외신보도에 의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를 보면 말로는 일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WTO의 체제가 가동하게 되면 일본에 대해서만 그것이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한국에도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 한국의 반도체산업에 대해서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보았을 때 정부가 개방의 폭을 좁히는 재협상은 안된다고 하는 그 주장의 이론적 근거는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태가…… 조금만 계십시오. 사태가 이런 지경에……

(장내소란)

여보시오 꼭 의원! 꼭 의원도 백발이 난 사람이 그렇게 그냥 불학무식한 사람처럼 하시면 되나.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떠들면 자꾸 시간만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사태에 이른 오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국익을 신장시키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에 놓여 있는 우리 농촌과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국회는 뭔가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러한 재협상 촉구 긴급결의안이라고 할까 동의안을 제출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지만 그 안이 이 회의에서, 본회의에서 표결을 얻기 위해서는 소속분과위원회에 가서 심사를 받은 후에 이 안건이 여기에 오

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자면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오는 7일이 그대로 넘어가 버릴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평소에 존경하여 마지않는 이만섭 의장에게 각별히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가지고 이 문제를 여야의 3당 회의, 3역 회의 혹은 무소속의 저기한 인물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축소된 기구에서 이 안건을 다루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바로 이 원의에 물어주셔서 다행히 이 원의에서 이 본회의에서 의장이 물으신 데 대해서 가하다고 만일 결정이 난다면 이 안건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 올린 축소된 소규모의 회의에서 다루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컨대 이만섭 의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그 높은 식견과 경륜과 정치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빌면서 이 정도로 간단히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섭 홍영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여야 원내총무단과 그리고 각 당 대표들과 협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여야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여야가 기어이 해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대와 국민이 우리에게 부과한 소임인 정치개혁법들을 여야합의 아래 이와 같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마침내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 한 획을 그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도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주는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과 제도가 지고지선 하다고 하더라도 먼 장래를 내다보며 그것을 지키려는 우리 정치인과 특히 법 집행자의 강한 의지 그리고 국민 모두의 의식전환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소망하는 밝은 미래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까지 헌신해 오신 이상으로 더욱더 지혜와 역량과 용기를 모아 이번에만말로 진정 새로운 의회민주주의의 신기원을 이룩한다는 마음으로 계속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밤늦도록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6분 산회)

○출석 의원 수(268인)

○출석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최형우
재무부장관	홍재형
농림수산부장관	김양배
보건사회부장관	서상목

○출석 정부위원

국가보훈처장	이충길
외무부차관	홍순영

【보고사항】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정치관계법심의특별	제정구	이원형	민주당

(3월 3일 자)

○의안 제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안(대안)

(이상 3건 3월 4일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1992년 6월 5일 정부 제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2월 19일 박상천·조순승·이원형·나병선·강수립·김충현 의원 외 89인 발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9월 16일 박상천·김병오·장기욱·김충조·강철선·강수립·임채정·양문희 의원 외 88인 발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안

(이상 2건 11월 15일 신상식·박희태·양창식·남재두·강신욱·김영일·강삼재·문정수·강용식·류홍수·백남치·송천영·최재욱·하순봉·황윤기·강인섭·김영진·김형오·박범진·박헌기·박희부·성무용 의원 외 150인 발의)

공직선거법안

(11월 25일 조세형·박상천·김병오·홍사덕·박실·정균환·강수립 의원 외 89인 발의)

(이상 6건 3월 4일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장 보고)

이상 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출

공직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법안

(2월 19일 박상천·조순승·이원형·나병선·강수립·김충현 의원 외 89인 발의)

(3월 4일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장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

(93년 9월 24일 정부 제출)

(3월 3일 외무통일위원장 보고)

농어촌특별세법안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 2월 15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3월 3일 재무위원장 보고)

수의사법 중 개정법률안

(93년 9월 7일 정부 제출)

청원산림보호직원배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93년 9월 28일 정부 제출)

사방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93년 10월 29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3월 3일 농림수산위원장 보고)

한국한의학연구소법안

(2월 12일 정부 제출)

(3월 3일 보건사회위원장 보고)

이상 7건 수정 의결

수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

(93년 9월 9일 정부 제출)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93년 10월 8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3월 3일 농림수산위원장 보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2월 12일 정부 제출)

(3월 3일 보건사회위원장 보고)

이상 3건 원안 의결

○청원 제출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내 스텍코너 임대에 관한 청원

(1993년 3월 4일 부산직할시 강서구 강동동 2201-5 문용만 외 103인으로부터 송두호 의원 외 5인의 소개로 제출)

3월 4일 교통체신위원회에 회부

○청원 심사

소류지관리개선에 관한 청원

(1992년 7월 2일 강원도 원주군 호저면 무장리 244 이상구 외 20인으로부터 박경수 의원

의 소개로 제출)

영산강 2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청원

(1992년 11월 7일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월악리 817 박종선으로부터 류인학 의원의 소개로 제출)

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에 관한 청원

(1993년 3월 11일 충청북도 진천군 만승면 금곡리 금천부락 권순천으로부터 민태구 의원의 소개로 제출)

기호농지개량조합분리독립에 관한 청원

(1993년 4월 14일 경기도 안성군 죽산면 죽산리 441-2 한영식으로부터 이해구 의원의 소개로 제출)

서남해지역트러어업허가에 관한 청원

(1993년 5월 8일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1동 580-14 김태철로부터 전남 목포시 죽교1동 580-14 한화갑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5건 3월 4일 농림수산위원장 보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1992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현대 제3차 APT 201동 1005호 송병찬 외 74인으로부터 김중위 의원의 소개로 제출)

대전법조청사조기건립에 관한 청원

(1993년 9월 9일 대전직할시 중구 선화동 188번지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주봉 외 1인으로부터 김원웅 의원 외 8인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3월 4일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침구사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관한 청원

(1993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151 고려빌딩 301호 한국침술연합회 회장 이석원 외 25인으로부터 손승덕 의원의 소개로 제출)

(3월 4일 보건사회위원장 제출)

이상 8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보고서

1993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3월 2일 농림수산위원장 제출)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제1차 총회 참석보고

(3월 4일 국제스카우트의원연맹회장 제출)

1993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위 보고서가 해당 기관으로부터 각각 제출되

었음

국회사무처 : 1994년 2월 17일

국회도서관 : 1994년 2월 25일

정부 : 1994년 3월 4일

○서면질문서 제출

내무부인사 및 나산스위트 등에 관한 질문서

(3월 2일 최재승 의원 제출)

방위성금에 관한 질문서

(3월 2일 강창성 의원 제출)

이상 2건 3월 2일 정부에 이송

MIG—29조립생산에 관한 질문서

(3월 3일 장준익 의원 제출)

밀수인삼에 관한 질문서

(3월 3일 정태영 의원 제출)

이상 2건 3월 3일 정부에 이송

대형건축물방화실태감사에 관한 질문서

(3월 3일 김옥두 의원 제출)

3월 4일 정부에 이송